

의안번호	2219849
의 퇴 인	복기왕 의원
회 답 일	2026.9.3.
추계번호	26B349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재정지원)	정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가입자가 영세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의 보험목적물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따라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제2항 신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9조(재정지원)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본문 참조

2. 상세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현행법에 근거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농어가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농작물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보험제도로 보상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가가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를 지원
 - (가축재해보험) 자연재해로 인한 가축피해를 보험제도로 보상함으로써 농

가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가가 부담하는 영업보험료의 50%를 지원

- (농업수입안정보험)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收入)감소위험을 관리하여 농가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를 지원
- (양식어업재해보험)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양식수산물 및 그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어업 생산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순보험료 50%, 운영비를 지원

□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재해보험가입자가 영세 농어업인이거나 농어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의 보험목적물을 경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따라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므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다만, 개정안은 보험료를 지원할 영세 농어업인과 농어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의 보험목적물에 대한 지원 대상의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향후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할 대상 및 기준을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 (사업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 지원('01~)
- ☐ (대상품목) 76개 품목 및 농작물 재배시설
* ('01) 2개(사과·배) → ('19) 62 → ('20~'22) 67 → ('23) 70 → ('24) 73 → ('25) 76
- ☐ (보장재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일부 품목)
- ☐ (지원내용) 순보험료의 50% 수준, 운영비 100% 지원
* 단, 품목별로 보장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 보조율 상이
- ☐ (사업예산) '26년 5,566억원(순보험료 4,741, 운영비 825, 미지급금 제외)

(단위:억원)

구 분	'20	'21	'22	'23	'24	'25	'26
농작물재해보험	3,598	3,519	5,621	6,077	5,356	4,842	5,017
사업비	2,713	3,298	4,381	4,686	5,126	4,697	4,741
미지급금	885	221	1,240	1,391	230	145	276
운영비지원	1,118	837	1,098	988	988	928	991
사업비	815	780	951	841	898	817	825
미지급금	304	57	147	147	90	110	166
합계	4,717	4,356	6,719	7,065	6,344	5,770	6,008
사업비	3,528	4,078	5,332	5,527	6,025	5,514	5,566

- ☐ (가입실적) '12년 이후 가입 지속 증가*하여 '24년 가입률 54.2% 기록
* ('12) 13.6% → ('20) 45.0 → ('21) 49.4 → ('22) 49.9 → ('23) 52.0 → ('24) 54.2
* 주요 품목 가입률('24) : 사과 99.1% 배 83.9 벼 63.5, 콩 58.0
- ☐ (지급실적) '01~'24년까지 총 7조 2,434억원의 보험금 지급, 재해 위험 대비 농가의 경영안정 장치로서 역할
 - (보험금) '24년 폭염, 호우 등으로 24.3만 농가에 보험금 1조 208억원 지급
* ('19) 8,980억 → ('20) 10,158 → ('21) 5,740 → ('22) 5,558 → ('23) 10,042 → ('24) 10,208
 - (손해율) 연도별 재해 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며, '24년 손해율은 97.9%, '24년까지 누적 손해율은 99.1%
* ('19) 186.2% → ('20) 150.6 → ('21) 74.2 → ('22) 65.0 → ('23) 107.3 → ('24) 97.9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사업목적)** 재해로 인한 가축·축사 피해를 보상하여 축산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97~)

□ **(대상축종)** 가축(16개 축종) 및 축산시설물

* 소, 돼지, 가금(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관상조), 말, 기타(사슴·양·벌·토끼·오소리)

□ **(사업내용)** 영업보험료(순보험료+운영비)의 50%(가입자별 최대 5천만원) 지원

* 지자체에서 0~45%(가입자별 상한有) 지원, 농가 보험료 부담은 5~50%(평균 38.9%)

□ **(사업예산)** '26년 1,102억원

(단위 : 억원)							
구분	'20	'21	'22	'23	'24	'25	'26
사업비	1,122	1,191	1,191	1,191	1,122	1,099	1,102

□ **(보장내용)** 자연재해, 질병(법정전염병 제외), 화재 등으로 인한 폐사 손실 보장

* 자기부담비율(소·말 20%, 가금·돼지 5%)을 제외하고 100% 보상

□ **(가입실적)** '24년 기준 가입률 95.4%(가입두수 298,222천두) 수준

* ('01) 21.7% → ('19) 93.3 → ('20) 92.8 → ('21) 93.7 → ('22) 94.7 → ('23) 94.4 → ('24) 95.4

□ **(지급실적)** '97~'24년까지 총 2조 1,278억원 보험금 지급, 재해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

○ **(보험금)** '24년 16개 축종, 11천 농가, 보험금 2,013억원 지급

* ('18) 2,393 → ('19) 1,743 → ('20) 1,477 → ('21) 1,462 → ('22) 1,679 → ('23) 1,648 → ('24) 2,013

○ **(손해율)** '18년 이후 손해율은 점차 안정화 추세

* ('18) 156.1 → ('19) 99.6 → ('20) 80.8 → ('21) 78.9 → ('22) 93.0 → ('23) 94.2 → ('24) 111.1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 **(사업목적)**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收入)감소 위험을 관리*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 지원('15~)

* 가격하락분과 수확량 감소분을 모두 감안하여, 보험 가입연도 수입이 평년 수입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 보상

- ☐ **(사업내용)** 순보험료의 50% 수준, 운영비 100% 지원

* 단, 품목별로 보장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 보조율 상이

- ☐ **(사업예산)** '26년 보험료·운영비 지원 예산 2,752억원

- ☐ **(대상품목)** '25년 15품목(본사업 9개, 시범사업 6개)

* ('15) 3개(콩·포도·양파) → ('16) 4(+마늘) → ('17) 6(+고구마·가을감자) → ('18) 7(+양배추) → ('24) 9(+보라·옥수수) → ('25) 15(+벼, 단감, 복숭아, 감귤(만감류), 가을배추, 가을무, 고랭지·봄감자)

- ☐ **(보장손해)** 자연재해, 조수해(야생동물피해), 화재, 시장가격하락 등

- ☐ **(사업시행)** NH손해보험

- ☐ **(가입실적)** '15~'24년 동안 총 18,544ha, 21,135 농가 가입

○ 품목별 주산지 등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가입률은 3% 수준

○ '24년 기준 총 9개 품목 2,649ha, 3,297 농가 가입, 가입률 3.9%

- ☐ **(지급실적)** '15~'24년 동안 총 14,383 농가에 보험금 954억원 지급

* 연도별 보험금: ('15) 4억원 → ('21) 25 → ('22) 40 → ('23) 59 → ('24) 63

○ '24년 기준 총 9개 품목 1,872 농가에 보험금 약 63억원 지급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개요) 재해피해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양식어업재해보험을 도입('08), 거대재해의 경우 국가에서 위험 부담(국가재보험)

* 손해율 140% 이상의 거대재해는 국가에서 위험(보험금)을 부담

- 보험사업자 : 수협중앙회
- 대상품목(30개) :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참돔, 돌돔, 감성돔, 쥐치, 농어, 기타 볼락, 송어, 우렁챙이, 뱀장어, 미역,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송어, 가리비, 톳, 능성어, 미더덕, 오만둥이, 터봇, 메기, 향어, 전복종자, 방어, 흰다리새우
- 보상재해
 - (주계약)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한파, 가뭄, 이상수온수질, 저수온 등
 - (특약) 전기장차위험, 이상수온수질, 고·저수온, 조수, 양식시설물, 팽생이모자반, 유빙 등
- 보장수준
 - 수산물 : 산지가격의 85~90% 수준으로 보상(보험가입금액 이내)
 - 시설물 : 원상복구비 전액(보험가입금액 이내)

- (지원) 보험가입 유도 및 어업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 일부 및 운영비 전부를 지원

* 지원비율(국고/지방비) :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 / 자부담의 40~60%

- (가입)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되, 사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物的보험이고, 가입여부는 양식어가가 자율적으로 결정(임의가입)

* 사람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人的보험은 가입의무 부여(ex 산재, 어선원)

- (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부상하여 재해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에 기여

* 가입률 : '08년 34어가(가입률 5.3%) → '24년 2,926어가(가입률 39.7%)

** 보험금 : '09년 1어가, 32백만원 → '24년 289어가, 314억원